

**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을 신청하는 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**  
(제53조제4항 관련)

1. 평가등록비

| 내용                 | 금액(1건당) |
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|
| 신기술인증              | 200만원   |
| 기술검증               | 200만원   |
| 신기술인증 및 기술검증 동시 신청 | 350만원   |

2. 평가수수료

「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」 제10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에 따라 기술검증신청인과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간의 협약으로 정한다.

3. 유효기간 연장신청 수수료(1건당): 2백만원